

『구미시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구미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귀농·귀촌 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)
- 귀농·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취소 등(안 제7조, 안 제8조)
- 사업지원(안 제9조, 안 제10조)
- 귀농·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
「주민등록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구미시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

-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
- 귀농·귀촌 지원계획의 수립과 정착 지원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, 사후 관리와 지원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, 귀농·귀촌 농업인에 대한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구미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,
- 제정 조례안 내용중,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“귀농업인”이란 -----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----- 말한다, “귀촌인”이란 -----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----- 말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귀농·귀촌 대상을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, 지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